

고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63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3. 6. 허옥희 의원 등 8인
나. 회 부 일 자: 2026. 3. 13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3. 26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최두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독서율 제고 및 지역 사회 문화 발전과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3)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4)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(안 제5조)
- 5)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대행 등(안 제6조)
- 6) 고성군 독서의 날 지정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·지원(안 제7조)
- 7)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(안 제8조)
- 8)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(안 제9조)
- 9)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(안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 법령: 「독서문화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
- 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예산 편성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5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조~제2조)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와 지역 특성을 반영함.
- (안 제3조) 군수의 독서문화 진흥 의무와 지원 책임을 규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4조)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국가·도 계획 연계, 기반 시설 확충, 독서 소외인 지원, 지역 서점·출판물 활성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 체계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5조~제6조) 연령별 프로그램, 독서 행사, 학술 연구, 지역서점 활성화 등 사업을 포괄하고, 실무협의체를 통한 자문·심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7조~제9조) 독서의 날·독서의 달 행사, 지역 서점·출판물 지원, 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행사 추진 및 우수자 포상 근거를 명시하며,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(안 제10조) 도서관, 학교,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·관 공동 자원 활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과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정책·사업·협력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실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법적·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